|  |  |  |
| --- | --- | --- |
|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  **절차(시범시행)> 공표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4]7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외사판공실, 공안청(국), 문화청(국), 각 주외국 중국 대사관·영사관, 주홍콩·마카오 공서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 행위를 진일보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절차(시범시행)>(이하 '<처리절차>'로 약칭)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바이며 성실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각 급 인력자원사회장, 외사, 공안, 문화 등 부서는 <처리절차>에 따라 단기간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이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단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업증명서에 열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불법취업으로 간주하여 조사·처리한다. 각 부서는 각 항의 관리제도를 점차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중국에서 단기취업하는 외국인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각 부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 준비를 마쳐야 한다. 외국인 재중 단기취업 증명서(중·영문) 및 외국인 단기취업정보표, 외국인 공연정보표의 전자파일 양식은 별도로 공표한다.  첨부: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절차(시범시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  2014년 11월 6일  첨부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절차(시범시행)**  1. 외국인 단기취업방문이라 함은 외국인이 각 호의 사유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90일 이하의 기간을 체류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1) 국내 협력업체에서 기술, 과학연구, 관리, 컨설팅 등 업무 수행;  (2)국내 체육기구에서 시험훈련 수행 (코치, 운동선수 포함);  (3) 영상 촬영 (광고영상물, 다큐멘터리 포함);  (4)패션쇼 (카모델, 인쇄광고 촬영 포함);  (5)국제성·영업성 공연 활동;  (6)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  2.다음 각 호의 경우는 단기취업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기계설비 구입시 부대로 제공하는 유지보수, 설치, 테스트, 해체, 지도 및 교육 등 서비스 수행;  (2) 국내 낙찰 프로젝트를 위한 지도, 감독, 검사 업무 수행;  (3) 국내의 지사, 자회사, 대표처로 파견받아 단기 업무 수행;  (4) 체육경기 참가(운동선수, 코치, 커미션 닥터, 보조원 등 관련인원 포함. 단, 국제체육조직의 요구에 따라 중국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등록카드를 소지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익이 따르지 않는 활동 또는 해외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지원봉사 등 활동 수행;  (6) 문화주관부서가 발급한 비준문서에 "국제성·영업성 공연 활동"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2), (3), (4)호의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M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고, (5), (6)호의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F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3. 위의 제1조, 제2조 (1), (2), (3), (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입국 한 후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해야 한다. 계절성 노동, 단기 노동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단기 영업성 공연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은 문화주관부서에서 발급한 비준문서 및 재중 단기취업 증명서(이하 "취업증명서"로 약칭)를 소지해야 한다. 기타 단기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허가 증명서(이하 "허가증서"로 약칭)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취업증명서에는 소지인의 국적과 성명, 업무내용, 업무장소, 취업기한, 발급일자 등 항목을 기재한다.  5. 단기취업자의 취업방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취업허가 신청  ① 인력자원사회부장부서에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외국인의 단기취업 방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협력업체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또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ⅰ) 국내 협력업체의 등기증명,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ⅱ) 중외 쌍방의 협력계약서, 프로젝트 계약서 등;  (ⅲ) 방문 예정 인원 이력서;  (ⅳ)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복사본);  (ⅴ) 전문기술직으로 단기취업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학력 또는 기술(직업)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ⅵ) 심사비준기구가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단기취업방문 사유가 명확·온전·합리적이고 국가의 법률·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의 단기취업 업무수행지가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성급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내 협력업체 소재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각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단기취업정보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주관부서에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외국 문환예술공연단체·개인이 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주최업체가 첫번째 공연 진행지의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문화주관부서는 <영업성공연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성·영업성 공연"임을 명기한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의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문화주관부서에서 취업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취업증명서에 기타 공연지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타 공연지 문화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취업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다.  공연지 문화주관부서는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이 입국하기 전에 국제성·영업성 공연 심사비준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공연정보표>를 문화부에 보고·제출하고, 문화부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전달한다.  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이 공연활동이 끝난 후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단기 영업성 공연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주최업체가 별도로 문화주관부서에 취업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취업기간은 체류 또는 거류 허가기한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심사비준 수속은 이 절차에서 규정한 "문화주관부서에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 발급  고용업체는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 또는 소속 피수권업체에서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공연주최업체는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 또는 첫번째 공연지가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정부 외사부서에서 피수권업체 초청확인서 발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 Z비자 신청  단기취업방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중국 주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국 기관(이하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으로 약칭)에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허가증서(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② 피수권업체의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  ③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④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은 허가증서(비준문서)의 원본 및 취업증명서의 원본을 검증한 후 복사본을 유보한다.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은 30일 체류기간의 사증을 발급하고 비고란에 "업무 수행기간이 취업증명서에 명기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 "를 명기해야 한다.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증 비고란에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수속을 처리해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중국과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단기취업을 하려는 경우 입국하기 전에 취업증명서를 획득하고 위의 서류를 중국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에 제출하여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4) 취업류 거류증 신청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 내에 업무활동이 가능하고 Z비자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자는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 내에 업무활동이 가능하고 취업증명서, Z비자 사증 등 증명자료를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체류기간 90일의 취업류 거주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은 취업증명서 및 Z비자 사증 등 증명자료를 공연주최업체 등록지 또는 첫번째 공연지의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거류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 연예인이 국내 기타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거류 수속을 중복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항  (1)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경우 공연주최업체는 적시에 문화주관부서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경우 국내 협력업체는 적시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심사비준기관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2) 단기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업무수행 기한이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취업증명서는 유효기한 만기 후 연장이 불가능하다.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업무활동을 완성 후 그 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 국내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규정>의 관련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첨부: 외국인 재중 단기취업증명서 (중·영문 양식)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ldbk/jiuye/JYzonghe/201411/W020141121593807517101.docx> |  | **关于印发《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相关办理程序**  **（试行）》的通知**  人社部发〔2014〕78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外事办公室、公安厅（局）、文化厅（局），各驻外使馆、领馆、处、驻香港、澳门公署：  为做好《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和《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等法律法规的贯彻实施工作，进一步规范外国人在中国就业行为，人力资源社会保障部、外交部、公安部、文化部联合制定了《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相关办理程序（试行）》（以下简称《办理程序》）。现印发给你们，请认真执行。  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外事、公安、文化等部门应按照《办理程序》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外国人办理相关手续。对于未按《办理程序》办理相关手续入境及不按工作证明所列事项从事短期工作的外国人，公安机关将按非法就业查处。各部门要逐步完善各项管理制度，加强协调配合，强化信息沟通，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外国人提供便利。  《办理程序》自 2015年1月1日起执行。请各部门抓紧做好执行前的各项准备工作。外国人在中国短期工作证明（中英文）和外国人短期工作信息表、外国人演出信息表电子模板另行发放。  附件: 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相关办理程序（试行）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外交部  公安部  文化部  2014年11月6日  附件  **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相关**  **办理程序（试行）**  一、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指因下列事由入境，且在境内停留不超过90日的：  （一）到境内合作方完成某项技术、科研、管理、指导等工作；  （二）到境内体育机构进行试训（包括教练员、运动员）；  （三）拍摄影片（包括广告片、纪录片）；  （四）时装表演（包括车模、拍摄平面广告等）；  （五）从事涉外营业性演出；  （六）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认定的其他情形。  二、以下情形不视为完成短期工作任务：  （一）购买机器设备配套维修、安装、调试、拆卸、指导和培训的；  （二）对在境内中标项目进行指导、监督、检查的；  （三）派往境内分公司、子公司、代表处完成短期工作的；  （四）参加体育赛事的（包括运动员、教练员、队医、助理等相关人员。但根据国际体育组织要求，经我国主管部门批准，持注册卡入境参赛等情况除外）；  （五）入境从事无报酬工作或由境外机构提供报酬的义工和志愿者等；  （六）文化主管部门在批准文书上未注明“涉外营业性演出”的。  具有（一）（二）（三）（四）情形，且停留时间不超过90日的，应当申请办理M字签证；具有（五）（六）情形，且停留时间不超过90日的，应当申请办理F字签证。  三、前述第一条、第二条第（一）、（二）、（三）、（五）项所列人员每次入境停留时间超过90日的，均应按照《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申请办理相关手续。入境从事季节性劳务、短期劳务按有关规定执行。  四、入境进行短期营业性演出的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应持有文化主管部门出具的批准文书及在中国短期工作证明（以下简称工作证明）；入境完成其他短期工作任务的，应持有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颁发的外国人就业许可证书（以下简称许可证书）及工作证明。  工作证明登记项目包括：持有人国籍和姓名、工作内容、工作地点、工作期限、签发日期等。  五、短期工作人员申请入境工作应按下列程序办理：  （一）申请工作许可  1、申请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许可证书及工作证明  境内合作方拟邀请外国人入境从事短期工作的，应向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者其授权的地市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提出申请，并提交以下证明材料：  （1）境内合作方登记证明、组织机构代码（均为复印件）；  （2）中外双方合作协议、项目合同等；  （3）拟入境人员简历；  （4）有效护照或其他国际旅行证件（复印件）；  （5）申请完成专业技术工作任务的外国人，应按国家规定提供相关学历或技术（职业）资格证明文件；  （6）审批机关规定的其他证明材料。  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对入境短期工作事由明确、完整、合理，且没有违反国家法律法规者，发放许可证书及工作证明。  外国人入境完成工作任务的地点涉及两个或以上省级地区的，应在境内合作方所在地的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申请办理相关手续。  各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应在外国人入境前，将《外国人短期工作信息表》，以电子文档形式报送人力资源社会保障部。  2、申请文化主管部门批准文书及工作证明  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拟入境进行营业性演出的，应当由演出举办单位向首次演出所在地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文化主管部门应当根据《营业性演出管理条例》及其实施细则的规定，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书，并注明“涉外营业性演出”；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其中，拟入境进行营业性演出的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在境内停留时间不超过90日的，文化主管部门为其出具工作证明。演出增加地已列入工作证明的，演出增加地文化主管部门不再另行出具工作证明。  演出所在地文化主管部门应在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入境前，将《外国人演出信息表》通过涉外营业性演出审批信息公示系统报送文化部，文化部以电子文档形式抄送人力资源社会保障部。  入境进行营业性演出的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完成短期工作任务后，拟继续在境内进行短期营业性演出的，演出举办单位应重新向文化主管部门申请工作证明，但工作时间不超过停留或居留许可有效期。审批手续依照本程序中“申请文化主管部门批准文书及工作证明”的有关要求办理。  （二）办理邀请函或邀请确认函  用人单位持许可证书及工作证明到注册地或所属被授权单位申请办理邀请函或邀请确认函。  演出举办单位持批准文书及工作证明到注册地或首次演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政府外事部门，办理被授权单位邀请确认函。  （三）申请Z字签证  获准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外国人，应到中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关（以下简称驻外签证机关）申请Z字签证。申请人应提供以下证明材料：  （1）许可证书（批准文书）和工作证明的原件及复印件；  （2）被授权单位邀请函或邀请确认函；  （3）本人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的原件和复印件；  （4）驻外签证机关要求的其他材料。  驻外签证机关对许可证书（批准文书）原件和工作证明原件进行核验，留存复印件。对于工作证明中工作期限不超过30日的，驻外签证机关均签发停留期为30日的签证，同时在备注栏做双语备注“工作时间不得超出工作证明所注期限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 ”；对于工作证明中工作期限超过30日的，签证备注栏中应注明入境后30日内办理居留手续。  与中国有互免签证协议国家人员，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需在入境前获得工作证明，并持上述材料到我国驻外签证机关申请Z字签证。  （四）办理工作类居留证件  工作期限不超过30日的短期工作人员，按工作证明上注明的工作期限工作，并在Z字签证中注明的停留期停留。工作期限超过30日的短期工作人员，按工作证明上注明的工作期限工作，并持工作证明、Z字签证等证明材料到公安机关办理停留期为90日的工作类居留证件。其中，外国文艺表演团体、个人可持工作证明和Z字签证等证明材料到演出举办单位注册地或首次演出所在地公安机关办理居留手续。已取得居留证件的外国演员在国内其他演出地演出，不再重复办理居留手续。  六、其他事项  （一）获得批准文书和工作证明的外国人取消工作任务未入境的，演出举办单位应及时函告文化主管部门；获得许可证书和工作证明的外国人取消工作任务未入境的，境内合作方应及时函告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审批机关。  （二）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其工作期限不得超出工作证明所注期限，工作证明到期后不延期。  持工作证明的外国人完成短期工作任务后，若其居留许可在有效期内，拟被境内用人单位聘用的，可按《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的有关程序在境内办理相关手续。  附件: 外国人在中国短期工作证明（中英文样式）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ldbk/jiuye/JYzonghe/201411/W020141121593807517101.docx> |